

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안내(1/2)

■ 자격확인 서류안내(예비당첨자 포함)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	발급 기준	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필수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) 등 • 외국국적동포(재외동포)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※ 모바일 신분증 불가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발급용(발급용도 :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/ 제출처 : 드파인 아르티아) ※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하여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하여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 신청자와의 관계) ※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 ※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
	○		출입국사실증명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※ 단신부임은 입증서류 및 세대원 전원 제출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~모집공고일로 설정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),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“예”로 설정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※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제출(배우자 분리세대 포함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,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표기하여 발급
	○		소득증빙서류	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※ 신혼부부·생애최초·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※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·비속의 소득입증서류
추가 서류		○	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(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) ※ [표3] 신혼부부·생애최초·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※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※ 발급기관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※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‘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’ 추가 제출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직계존속	•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관계등 “전체포함”하여발급
		○	임신진단서 (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)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-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[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] 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	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	• 임신의 경우(양식 : 견본주택 비치)
		○	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	•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표기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•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•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※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
		○	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	본인	• 출산특례로 당첨되고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가 기존주택을 소유한 경우 • 견본주택 비치 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(별지 제6호서식)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(군복무 기간 명시)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	○	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	배우자	•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(주택소유여부 확인용)
부적격 통보 받은자		○	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	해당주택	• 일반주택 :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• 무허가주택 :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• 폐가, 멸실주택 :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자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대리인 신청 시		○	위임장	청약자	• 견본주택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	○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(용도 :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/ 제출처 : 드파인 아르티아)
		○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**[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6.19.(금)) 이후 발행분]**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
※ **상기 서류는 발급 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‘전체포함’, ‘상세’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**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**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
■ 소득 증빙 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출산휴가,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, '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※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※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, 해당직장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(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)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, 본인의 근로(연봉)계약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 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 ② 해당직장
	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	① 재직증명서(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)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원본)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명	①, ②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공고일 이전 가입)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본) ② 사업자등록증명	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
	법인대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② 전년도 재무제표(원본)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(직인날인) ③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④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(원본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 ②,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
프리랜서 (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)		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(직인날인) ② 위촉(해촉)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 ② 해당직장, 세무서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※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 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	① 행정복지센터
일용직 근로자		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② 위촉(해촉)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※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: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(해촉)증명서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해당직장, 세무서 ② 해당직장
무직자	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견본주택 비치)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(소득사실 없음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	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

※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당첨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(예시 :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)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※ 해당직장,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※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,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.

■ 자산 증빙 서류

해당자격		자산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"부동산소유현황"이 있는 경우	필수	① 부동산소유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→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(*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되니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)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(전국단위 재산세 내역 발급) ④ 공동(개별)주택공시가격 확인원(*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) ⑤ 개별공시지가확인원(*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) 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(*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) - 서울시 : 이택스 > "ETAX" 이용안내 > 조회/발급 >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- 서울시 외 : 위택스 > 지방세정보 >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	①,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, 정부24 ③ 위택스 (www.wetax.go.kr) ④, ⑤ 행정복지센터 ⑥ 서울시 : 이택스 (etax.seoul.go.kr), ⑥ 서울시 외 : 위택스 (www.wetax.go.kr)
	추가 (해당자)	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	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(www.eum.go.kr)
"부동산소유현황"이 없는 경우	필수	① 부동산소유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'부동산 소유 현황'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※ 본인 및 청약자 공동/금융인증서 지참(* 견본주택에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조회내역 확인)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(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 ※ 위택스 > 발급 >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>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※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명 / 전국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② 위택스 (www.wetax.go.kr)